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합산분할과세 시나리오 분석

이예지* · 조형태** · 차상권***

〈요 약〉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고,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결 기미가 없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자녀 관련 세제 지원이 OECD 주요 회원국 중 하위권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조세 지원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원칙인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재검토하고 독일, 프랑스와 같은 소비단위의 합산분할과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합산분할과세를 도입할 경우 각 세대의 소득세 부담세액 변화가 산출세액 수준에서 어느 정도될 것인지를 재정패널 미시자료를 토대로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단위과세제도 하에서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산출세액을 비교할 때, 홀벌이 가구가 부담하는 평균 산출세액이 맞벌이 가구의 평균 산출세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독일과 같은 부부단위 과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맞벌이 가구보다 홀벌이 가구의 산출세액의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 구간 뿐만 아니라 저소득 구간에서도 산출세액의 감소가 나타났다. 프랑스와 같은 가족단위과세를 적용할 경우에도 홀벌이 가구에 대한 산출세액 감소효과가 컸고, 이러한 양상은 맞벌이 가구에 비해 넓은 소득 구간에서 산출세액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단위과세 적용시 부양 자녀의 수가 클수록 감소효과가 두드러졌는데, 특히 부양자녀가 3명 이상 일수록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 가족계수의 증분 정도가 중요함을 보였으며, 고소득자에 대한 산출세액 감소 효과가 홀벌이 가구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에서 소비단위로 변경할 경우 자녀 양육에 따른 소비부담을 반영하여 가구 전체의 소득세부담이 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합산분할과세 논의시 조세의 혼인 중립성 훼손, 과세형평성, 세수감소, 납세협력비용 등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 대응 목적으로 조세 측면에서 과세단위를 수정할 경우 부담세액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 yeji0320@uos.ac.kr, 주저자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cht1212@hongik.ac.kr, 교신저자

*** 칼빈대학교 글로벌문화경영학과 조교수, sgcha01@hanmail.net, 공동저자

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다만, 분석 수준이 산출세액의 감소 정도까지만 분석되었고, 현행 소득 공제가 그대로 적용됨을 가정하였다는 점과 부부 간의 소득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주제어〉 저출산, 개인단위과세, 합산분할과세, 부부단위과세, 가족단위과세

I. 서 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고,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결 기미가 없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여 정부 차원에서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졌고, 주요 외신들도 한국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¹⁾

그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수당 지급 등 정부의 재정 투입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각종 문헌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세제 측면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폭이 OECD 주요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이라는 연구²⁾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녀 관련 공제제도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재정지원정책 등과의 통합적 고려를 통해 조세 지원 정책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³⁾ 실제로 입법부에서도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률안⁴⁾을 내놓는 등 조세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조세제도들에 대한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기저(基底)에 있는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과세단위를 부부 또는 가족단위인 소비단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⁵⁾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주의

1) 연합뉴스 (2024.02.29.) ‘세계 최저’ 한국 출산율. 일본 등 해외매체들 집중조명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40229018400032>)

2) 한국경제신문(2023.7.25.) “獨선 2자녀 땀 소득세 15%P 깎아줘 … ‘출산을 끌어’ 韓은 3%P 감면”, OECD (2023)에서 2022년 기준으로 독신가구와 비교할 때 두 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의 세부담률은 OECD 평균 8.9%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폴란드가 21.7%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독일과 미국은 각각 15%, 10.6% 낮아졌으나, 우리나라 감소 폭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2023), p.30).

3)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출산 혼인 양육 관련 조세지원 현황 및 입법 동향” (2023.08)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191(발의연월일 2024.06.07.)

5) 이세진 · 이예지(2023)

이며, 한때 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에 한하여 부부단위 합산비분할주의가 적용된 바가 있으나 위헌 판결로 인해 현재는 공동사업합산과세를 제외하면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생활의 기본단위가 부부 또는 가족단위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개인단위 소득세 과세제도는 동일한 소득을 가진 가구 단위 간에 세부담이 동일해야 한다는 가구 간의 공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오종현 등 2024). 이러한 이유로, 자녀 양육에 따른 소비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소득세부담 과세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에서 소비단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단위는 소득을 소비하는 부부 또는 가족 등을 과세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오종현 등 2024).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독일은 납세의무자가 개인단위와 부부단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프랑스는 가족단위 소득세 과세체계를 이루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소득세 과세단위를 납세의무자가 개인단위와 부부단위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누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산정시 부부단위소득의 분할 여부에 따라 그 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론적으로, 합산분할주의는 소비단위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다시 구성원 별로 분할하여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합산비분할주의는 소비단위 세대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후 분할하지 않고 합산소득 전체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독일은 전자인 합산분할주의로 합산한 부부의 소득을 2로 나누어 세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된 세액에 2배를 곱하여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선택적 2분2승제라 일컫는다. 한편, 미국은 합산비분할주의로 부부합산소득을 2로 나누지 않고 대신 소득세 과세단위를 선택한 납세자 지위에 따라 세율을 4종으로 구분한다(이하, 복수세율표). 즉 연방소득세율은 10~37%(surtax 제외)로 동일하지만, 각 연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납세자가 선택한 과세단위가 부부단위인지 개인단위인지에 따라 다르다. 부부단위를 선택한 납세자의 각 연방소득세율에 대응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개인단위 선택의 과세표준 구간의 약 2배이다. 이는 비록 합산분할주의와 합산비분할주의는 소비단위 구성원의 소득 합계액의 분할 여부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초과누진세율 체계 하에서 개인단위 보다 세대 전체 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합산분할주의 방식을 기준으로 논하고자 한다.

아울러 가족단위 하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프랑스는 가족 당 과세표준을 가족 전체 과세대상 순소득 합계액을 가족계수로 나누어 산정되고 계산된 가족 당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다시 가족계수를 적용하여 세대단위 당 산출세액을 산정한다. 이에 프랑스의 소득세 과세방법은 독일과 같은 합산분할주의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 세대가 적용받는 소득세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가족계수(family quotient)라는 것이다. 가족계수는 결혼여부, 부양자녀 등에 따라 일정부분(part)의 계수가 부여되는데,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1계수가 적용되고, 자녀의 경우 두 자녀까지는 각각 0.5계수가 추가로 적용되다가 세 번째 자녀부터는 0.5계수의

2배인 1계수가 적용된다. 세 번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가족계수의 확대 정책은 1980년, 당시 저출산 문제가 프랑스의 국가적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시작되었고, 해당 조세정책이 프랑스의 출산을 증가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되기도 한다(Laroque and Salanié 2014).

이에 본 논문은 초저출산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개인단위 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시자료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공하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에서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소비단위의 합산분할과세를 적용할 경우 부양자녀가 있는 세대의 소득세 부담세액의 변화를 소득 구간·가구 유형 별(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로 분석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납세 비용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으나, 소비단위의 소득세 과세체계가 개인단위와 가장 구별되는 차이점은 가구 전체 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조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시 가구 전체의 부담세액의 변화를 산출세액 측면에서 파악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패널 미시자료를 토대로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산출세액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단위 과세제도 하에서 홀벌이 가구가 부담하는 평균산출세액이 맞벌이 가구의 평균산출세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독일 등과 같은 부부단위 과세제도로 변경할 경우 맞벌이 가구보다 홀벌이 가구의 산출세액의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홀벌이 가구의 한 개인납세자가 세대를 부양할 정도의 소득 수준에서 과세되다가, 2분2승제로 과세표준이 감소하여 한계세율의 감소효과가 크게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소득세 산출세액의 변화를 소득 10분위 구간 별로 살펴본 결과, 산출세액 감소율이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도 나타났다. 이는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에서 소비단위로 변경할 경우 그 효과가 고소득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단위 유형별로 비교하면, 독일과 같은 부부단위 보다 프랑스와 같은 가족단위과세를 적용할 경우 홀벌이 가구의 산출세액 감소효과가 컸고, 그 효과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보다 넓은 소득 구간에서 나타났고, 고소득자에 대한 산출세액 감소 효과도 홀벌이 가구에서 크게 나타났다. 또한 프랑스 가족계수제도 하에서 소득세 산출세액의 감소정도는 부양 자녀의 수가 클수록 두드러졌는데, 특히 자녀가 3명 이상일수록 감소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독일의 2분2승제와 달리 프랑스 가족계수 제도 하에서 가족 당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가족계수는 부양자녀 수(특히 자녀 3명 이상)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가족계수의 특징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현행 개인단위 과세 하에서 동일 소득·소비 전제 하에 맞벌이 가구보다 홀벌이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합산분할과세를 도입한다면 자녀 양육에 따른 소비부담이 반영된 가구 전체의 소득세부담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합산분할과세 도입 시 조세의 혼인 중립성 훼손, 과세형평성, 세수 감소, 납세협력비용 등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개인단위과세제도와 합산분할과세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국내외 제도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 시나리오 분석 방법 및 표본 선정을 설명한 후에 제Ⅳ장에서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시나리오 분석결과 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고려사항에 대하여 서술한다.

Ⅱ.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고찰

1. 관련 선행연구

개인소득세 과세단위의 변경을 포함한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조세 지원과 관련된 국내연구는 대부분 현행 국내제도에 대한 검토와 해외 제도에 대한 비교하는 선에서 연구가 이뤄졌고, 미시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없다.

우선 현행 혼인, 출산,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연구로 박성은(2023)은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을 비교하였다. 또한 과세표준 조정을 포함한 주요국의 조세지원 사례를 비교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의 공제제도가 주요국에 비해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은 경향이 있어 재정지원정책 등과의 통합적 고려를 통해 조세지원정책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개인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연구로 김완석(2005)은 독일, 프랑스와 같은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소득세 과세단위의 결정에 있어 고려사항을 논하였다. 그에 대한 결론으로 기혼 부부에 대한 소득세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단위 합산분할주의 중 납세자가 선택하게 하고, 부부단위 합산분할주의를 적용할 경우 2분2승제 등을 도입하되, 복수세율표, 분할계수, 세액 경감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연대납세의무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오종현 등(2023)은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과세단위 유형별 세부담을 OECD(2023)의 평균임금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동일한 소득 수준이더라도 결혼 여부, 자녀 유무, 가구의 노동공급 행태에 따라 달라짐을 보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프랑스 가족단위 과세제도가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세진·이예지(2023)는 현행 개인별 과세제도가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혹은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고 하면서, 소득공제 확대나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른 차등적 세율 적용 등 적정 과세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해외 연구에서는 비교적 실증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세제가 출산률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있긴 하였는데, 특히 선진국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 제도를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가 적지 않다. Chen(2011)은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랑스의 주요 가족 계수(1945년) 등의 세제정책을 실증분석한 결과, 세후순가계소득이 1% 증가하면 평균적으로 자녀가 0.09명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OECD(2011)은 OECD 국가의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해 왔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 일부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소폭 상승하였다고 하면서도, 한국의 낮은 출산률의 경우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제약적인 요인이라고 보았다. 해당 연구에서 출산율 지원 정책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면서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프랑스를 들었는데, 프랑스가 대가족에 중점을 두어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고 하면서 자녀가 많은 가정에 더 큰 세금 혜택을 주는 프랑스 조세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Gauthier(2007)은 가족정책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 타 연구를 검토하면서, 여러 연구에서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소규모의 긍정적 영향이 발견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찾지 못한 연구들도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 출산율보다는 출산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Letablier(2008)은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면서 단일한 정책이 출산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여러 정책이 결합되어 부모가 원하는 만큼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친가족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대부분의 세제정책이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제도와 연계되었다고 보았다. Laroque and Salanié(2014)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프랑스에서 출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면서 특히 셋째 아이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수 있음을 보였다. Thévenon(2011)은 28개 OECD 국가의 가족 정책 모델의 다양성(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 등 포함)을 분석하였는데, 북유럽 국가들은 매우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있었고, 앵글로색슨 국가들은 저소득층과 대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을 주로 유아 교육과 초기 초등 교육에 집중한 반면, 아시아 국가들의 가족 지원은 모든 차원에서 훨씬 더 낮았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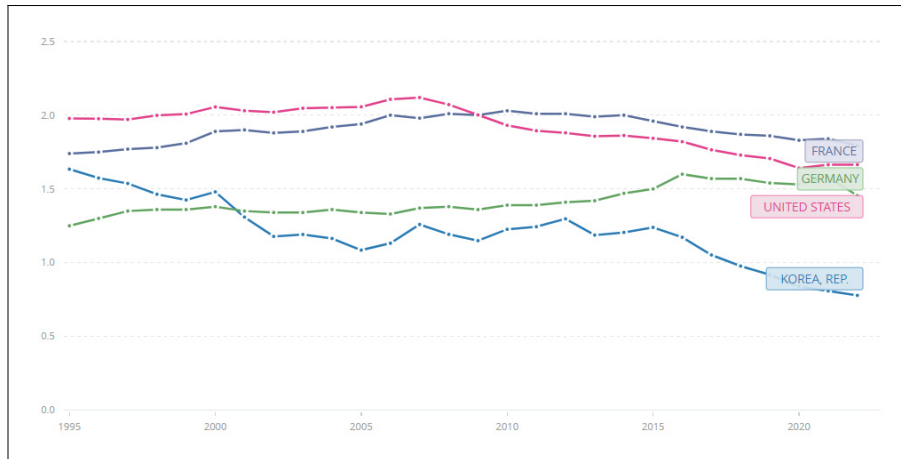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 대응 목적으로 조세 측면에서 과세단위를 수정할 경우 부담세액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소득세 과세단위의 변화는 근원적인 세제의 변화이므로 해당 정책을 적용하기 전에 실증적 증거 자료의 검토는 필히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미시 수준 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2.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소득세 과세단위제도

본 절에서는 개인단위과세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소비단위를 취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부부단위), 프랑스(세대 단위) 과세제도를 비교해 본다. 이들 국가는 여성 1명당 1.5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그림 1 참조>⁶⁾)이면서도 세제에 있어서는 우리와 다른 소비단위 과세를 인정하고 있다.

6)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end=2022&locations=KR-DE-FR-US&start=2000>

〈그림 1〉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출산율 비교



출처 : data.worldbank.org

가. 개인단위 과세제도 : 한국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을 과세단위로 두고 있고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소득세를 산정하여 신고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⁷⁾ 신고 납부시 다음과 같은 누진적인 소득세율⁸⁾을 취하고 있다.

〈표 1〉 한국 소득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1,400만원 초과분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5,000만원 초과분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8,800만원 초과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1억5천만원 초과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3억원 초과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 7,406만원+5억원 초과분의 42%
10억원 초과	3억 8,406만원+10억원 초과분의 45%

7) 소득세법 제1조, 제2조

8) 소득세법 제55조

과거에는 이러한 개인과세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자산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부단위로 합산하여 분할 없이 상기 소득세율을 적용한 후 과세(합산비분할과세)하였다. 따라서 자산소득이 있는 부부의 경우 개인단위과세할 경우에 비해 높은 한계세율의 적용을 받았었는데, 배우자간 자산소득합산과세의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⁹⁾로 인해 2002년부터 완전한 개인단위과세제도로 변화¹⁰⁾하였다.

이러한 개인단위과세는 결혼에 대한 중립성 유지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현재의 비혼 및 저출산 문제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감안할 때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김완석 2005). 첫째, 과세 공평성 측면에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부(또는 가족)단위 지급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개인 기준보다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실질과세 원칙 측면에서 부부가 협력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명의상 부부 일방에게 귀속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쌍방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조세회피 측면에서 개인단위주의와 초과누진세율 하에서는 부부 또는 가족 간 인위적 소득분산에 의하여 소득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으므로 소득분산을 하지 못한 납세의무자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 넷째, 민법상 부부재산제와의 관계 측면에서 개인단위주의는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공동기여를 배려하고 있지 않으며,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제도, 상속법상 기여분제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¹¹⁾

나. 부부단위 과세제도 : 미국과 독일

(1) 미국 부부단위 과세제도의 개요

미국 연방소득세법하에서는 ‘복수세율표제’¹²⁾ 하에서 공동신고제 또는 별도신고제 중 선택할 수 있다.¹³⁾ 세율은 납세자 지위에 따라 개인단위과세 선택 기혼자(Married filing seperately), 공동신고 선택 기혼자(Married filing jointly), 독신자(Single) 및 독신세대주(Head of household) 4개로 아래와 같이 세분화되어 있다.

9) 헌법재판소 2002.8.29. 2001헌바82

10) 개인단위과세제도의 예외로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합산과세특례(소득세법 제43조)가 있는데, 개인 납세자와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규정이 있다.

11) 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재산제를 채택하여 부부의 재산문제를 정하도록 하되,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법정재산제인 부부별산제에 따른다(민법 제829조 내지 830조).

12) 독신자·부부 또는 가족과 같은 소비단위의 크기 등에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표를 적용하는 것을 단일세율표주의라 하며, 소득단위 크기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표를 적용하는 것을 복수세율표주의라 한다(김완석·정지선, 『소득세법론』, 서울 : 삼일인포마인, 2023, p.72).

13) 김완석, 앞의 글, p.188.

〈표 2〉 미국 연방소득세율

(단위 : 달러)

세율	2023 과세연도 기준, 과세소득 구간			
	독신자	공동신고 기혼자	별도신고 기혼자	독신 세대주
10%	0 ~ 11,000	0 ~ 22,000	0 ~ 11,000	0 ~ 15,700
12%	11,001 ~ 44,725	22,001 ~ 89,450	11,001 ~ 44,725	15,701 ~ 59,850
22%	44,726 ~ 95,375	89,451 ~ 190,750	44,726 ~ 95,375	59,851 ~ 95,350
24%	95,376 ~ 182,100	190,751 ~ 364,200	95,376 ~ 182,100	95,351 ~ 182,100
32%	182,101 ~ 231,250	364,201 ~ 462,500	182,101 ~ 231,250	182,101 ~ 231,250
35%	231,251 ~ 578,125	462,501 ~ 693,750	231,251 ~ 346,875	231,251 ~ 578,100
37%	578,126 ~	693,751 ~	346,876 ~	578,101 ~

주 : 2023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미국 소득세 납세자 신분에 따른 세율 및 과세구간임.

자료 : pwc, 「Worldwide Tax Summaries」, 2023.1.20.,

<<https://taxsummaries.pwc.com/united-states/individual/taxes-on-personal-income>>

당초 미국의 연방소득세법은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였으나, 연방대법원에서 부부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State)에서 기혼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이등분한 금액을 각자의 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판결¹⁴⁾함에 따라 1948년 부부의 경우 거주하는 주와 무관하게 연방 소득세 신고시 각자의 소득을 별도신고 또는 2분2승제에 의하여 공동으로 신고(합산분할주의)¹⁵⁾할 수 있는 ‘선택적 2분2승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2분2승제 방법은 세 부담 측면에서 독신자에 비하여 기혼자, 그 중 홀벌이 부부에게 유리하여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1951년에 독신세대주를 위한 세율표를 제정하였고 1969년에 독신자용 별도세율을 도입하여 현행과 같은 연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 독일 부부단위 과세제도의 개요

독일 연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개인단위와 2분2승제 중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과세한다. 2분2승제는 합산한 부부의 개별소득금액의 50%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세액의 두 배를 곱하여 부부의 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하는 산정하는 방법이다.¹⁶⁾ 부부 일방이 개별과세 방법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합산분할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독일연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4) Poe v. Seaborn, 282 U.S. 101(1930)

15) 합산분할주의는 소비단위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다시 구성원별로 분할하여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며, 합산비분할주의는 소비단위 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임(김완석·정지선, 앞의 글, p.72).

16) 김완석, 앞의 글, p.187. 및 오종현 등, 앞의 글, pp.101~102.

〈표 3〉 독일 소득세율

(단위 : 유로, %)

구간	과세표준		한계세율	세부담범위 (공동신고의 경우 2배)
	개인별 신고	공동 신고 (기혼자 또는 동성파트너)		
1	10,908 이하	21,816 이하	0	0
2	10,909 이상 15,999 이하	21,817 이상 31,998 이하	14~23.97	0~ 967
3	16,000 이상 62,809 이하	31,999 이상 125,618 이하	23.97~42	967~ 16,407
4	62,810 이상 277,825 이하	125,619 이상 555,650 이하	42	16,407~106,714
5	277,826 이상	555,650 이상	45	106,714~

주 : 1구간은 기본공제 구간으로 세액이 0이 되며, 2,3구간은 한계세율이 증가하고, 4,5구간은 한계세율이 일정함.

자료 : 오종현 외(2023)

결혼한 부부의 합산 소득이 100,000 유로이고 이중 남편의 연소득이 80,000 유로(세율 42% 가정), 아내의 연소득이 20,000 유로(세율 30% 가정)세율 일 경우 개인단위로 신고를 한다면, 남편이 납부하는 세금은 33,600 유로이고, 아내는 6,000 유로이어서 이 부부단위에서 납부하는 총 세금은 39,600 유로가 된다. 반면 2분2승제를 선택하는 경우 남편과 아내의 합산 소득인 100,000유로의 절반인 50,000 유로에서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결정(세율 30% 가정)되고, 이에 따라 각각 산정되는 세금은 15,000유로($50,000\text{유로} \times 30\%$)가 되어 해당 부부단위에서 납부하는 총세금은 30,000 유로가 된다.

〈표 4〉 개인단위와 2분2승제 적용시 산출세액 산정 비교

구분	개인단위	2분2승제
남편	33,600 ($=80,000 \times 42\%$)	15,000 ($=(80000+20000)/2 \times 30\%$)
아내	6,000 ($=20,000 \times 30\%$)	15,000 ($=(80000+20000)/2 \times 30\%$)
세금합계	39,600	30,000

주 : 이해를 돕고자 2분2승제 적용시 남편, 아내가 부담할 세액을 총 세액의 절반으로 나누어 표기
출처 : 저자 작성

다. 가족단위 과세제도 : 프랑스

프랑스의 개인소득세 과세단위는 가족단위로,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결정하며,¹⁷⁾ 부양자녀가 있는 세대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인적공제 대신에 생계를 같이하는

17)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 프랑스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p.68.

세대단위의 개념을 반영한 가족계수제도(family coefficient sytem)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을 표준으로 설계한 것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세부담 경감과 출산을 제고를 위해 1945년에 도입되었다.¹⁸⁾ 이에 따라, 가족당 과세표준은 가족 전체의 과세대상 순소득¹⁹⁾ 합계액을 가족계수(family quotient)로 나누어 산정되고, 계산된 가족당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가족당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다시 가족계수를 곱하여 세대단위당 산출세액을 계산한다.²⁰⁾ 소득세 과세표준은 가족 전체의 과세대상 순소득 합계액을 가족계수로 나누어 산정되므로, 부양자녀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신윤정 2013 ; 안종석 · 박수진 · 이서현 2017).

가족계수제도에서 가족계수는 소득세산정의 중요한 요소로, 납세의무자의 결혼여부, 부양자녀 수 등에 따라 일정 계수가 부여된다.²¹⁾ 2023년 기준, 가족계수는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1단위의 계수이며 여기에 첫 번째 자녀와 두 번째 자녀까지는 0.5의 계수가 가산되고, 세 번째 자녀부터는 1의 계수가 가산된다(아래 <표 5> 참조).²²⁾

<표 5> 프랑스의 가족계수

부양자녀 수	부부	독신 · 이혼
0	2	1
1	2.5	1.5
2	3	2
3	4	3
4	5	4
3번째 자녀부터 자녀 1명 추가시	1	1

주 : 가족계수는 일반적인 경우의 부부합산과세, 독신 · 이혼한 세대의 부양자녀수에 따른 가족계수임.

출처 : General Tax Code, Article 194, 프랑스 경제부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quotient-familial>>

예를 들어, 부양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족의 가족계수는 2가 되고, 독신의 가족계수는 1이 된다. 부양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의 가족계수는 자녀 1명인 경우 2.5, 자녀 2명은 3, 자녀 3명은 4, 자녀 4명은 5 계수가 적용된다.²³⁾ 사별한 경우 사별한 배우자의 가족계수가 부여되므로 가족

18) 안종석 · 박수진 · 이서현,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 17-03』, 2017, p.61.

19) 과세대상 순소득은 총소득(revenue brut)에서 공제액(déduction)을 차감하여 산출된다.

20) 위의 책, p.61.

21) The General Tax Code, Article 193

22) 장애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부양자녀의 경우 0.5 계수가 추가된다.

계수는 달라지지 아니하고,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가족계수는 부여되지 아니하고 본인의 부양자녀수에 대한 가족계수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가족계수제도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 경감 문제 방지를 위한 가족계수제도 통합한도규정이 있는데(신윤정 2013 ; 안종석 · 박수진 · 이서현 2017), 상한액은 납세자 본인 가족계수 1(부부합산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총 가족계수 2)에 추가되는 0.5명 조세경감 한도액은 1,678 유로(2023년 기준)이다.²⁴⁾ 프랑스의 과세소득 구간별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 6〉 프랑스 소득세율

(단위 : 유로, %)

과세소득 구간		세율
2022년	2023년	
≤ 10,225	≤ 10,777	0%
10,226 ~ 26,070	10,778 ~ 27,478	11%
26,071 ~ 74,545	27,479 ~ 78,570	30%
74,546 ~ 160,336	78,571 ~ 168,994	41%
> 160,337	> 168,995	45%

주 :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부과받는 바, 과세소득이 25만유로를 초과해 50만유로 이하일 경우 3%, 50만유로를 초과해 100만유로 이하일 경우 4%, 100만유로를 초과할 경우 4%를 추가적으로 부과함

출처 : 오종현 외(2023)

(1) 계산 예시²⁵⁾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의 합산소득이 150,000 유로로 동일한 상황에서 부양자녀가 2명(Case A), 3명인 경우(Case B), 자녀가 없는 경우(Case C)의 현행 관련 세법에 따른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부부의 합산소득은 동일하고 부양자녀수에 의해 Case A의 가족계수는 3, Case B는 4, Case C은 2가 된다.²⁶⁾

가족계수로 인해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자녀가 2명인 경우 50,000 유로, 자녀가 3명인 경우 37,500 유로로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의 과세표준 75,000 보다 각각 25,000 유로, 37,500 유로로 낮고 이에 가족단위 산출세액은 자녀 2명인 Case A는 25,781 유로, 자녀 3명인 Case B

23)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2명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 1계수에 부양자녀 2명에 대해 1계수가 추가 (0.5×2)됨에 따라 가족계수는 3이며, 세 번째 자녀부터는 1계수가 추가된다.

24) The General Tax Code, Article 197 I.2.

25) 안창남(2009, p.120)의 사례를 최근 관련 법 규정을 적용하여 재작성함.

26) 안창남(2009, p.120)의 사례를 최근 관련 법 규정을 적용하여 재작성하였다.

19,375 유로, 자녀가 없는 Case C는 32,187 유로로 산정되어 각각 부양자녀가 없는 Case C 보다 6,406 유로, 12,812 유로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그러나 부양자녀에 따른 추가되는 가족계수 1당 한도액은 3,356 유로이므로 부양자녀가 2명인 Case A는 3,050 유로, 부양자녀가 3명인 Case B는 6,100 유로의 세금 감소분은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최종 납부할 세액은 각각 28,831 유로, 12,812 유로가 된다.

〈표 7〉 가족계수제도 적용 소득세 산출세액 산정 예시

(단위 : 유로)

구분	부양 자녀가 2명이 결혼한 부부 Case A	부양 자녀가 3명이 결혼한 부부 Case B	부양 자녀가 없는 결혼한 부부 Case C
가족계수	3	4	2
가족계수 1의 과세표준	50,000 ¹⁾	37,500 ²⁾	75,000 ³⁾
세율	30%	30%	30%
가족계수1의 산출세액	8,594 ⁴⁾	4,844 ⁵⁾	16,094 ⁶⁾
가족계수3 또는 2의 경우 산출세액 ⁷⁾	25,781 ⁸⁾	19,375 ⁹⁾	32,187 ¹⁰⁾
가족단위 산출 이익	6,406 ¹¹⁾	12,812 ¹²⁾	—
부양 자녀 2명에 대한 한도	3,356 ¹³⁾	6,712 ¹⁴⁾	—
한도초과액	3,050 ¹⁵⁾	6,100 ¹⁶⁾	—
납부할 세액	28,831 ¹⁷⁾	12,812 ¹⁸⁾	32,187

주 : 1) $150,000/3$, 2) $150,000/4$, 3) $150,000/2=75,000$, 4) $(27,478-10,777) \times 11\% + (50,000-27,478) \times 30\%$,
5) $(27,478-10,777) \times 11\% + (37,500-27,478) \times 30\%$, 6) $(27,478-10,777) \times 11\% + (75,000-27,478) \times 30\%$,
7)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계수 3, 4의 산출세액,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가족계수 2의 산출세액을
의미함, 8) $8,594 \times 3$, 9) $4,844 \times 4$, 10) $16,094 \times 2$, 11) $32,187-25,781$, 12) $32,187-19,375$, 13) $1,678 \times 2$,
14) $1,678 \times 4$, 15) $6,406-3,356$, 16) $12,812-6,712$, 17) $25,781+3,050$, 18) $19,375+6,100$

출처 :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 프랑스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p.120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재작성함

Ⅲ. 시나리오 분석 방법 및 표본 선정

1. 시나리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단위를 현재의 개인단위에서 독일과 같은 부부단위과세 또는 프랑스와 같은 가족단위로 변경할 경우 가구 전체의 소득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가구원별 소득 관련 미시데이터가 필요한데, 본 논문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되, 세법개정으로 인한 소득세 과세제도의 변화를 통제하고자 재정패널자료의 가장 최근 시점인 제15차(2021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가구 전체의 소득세부담은 세액공제와 감면을 반영하여 계산되어야 하나, 세액공제·감면은 개별 가구의 소비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본 논문은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소득세부담을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 소득세 산출세액은 소득의 종류(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8〉 소득세 산출세액 방법

[각 개인별 소득세 산출세액]	
=개인별 소득세 과세표준(=총급여액(재정패널자료 근로소득금액 코드(p15bb002))	
-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액-소득공제(재정패널자료 근로소득 전체 소득공제금액	
(코드 p15ca002))×세율(6~45%)	(식 1-1)
[개인단위의 가구 전체 소득세 산출세액]	
=Σ 각 개인별 소득세 산출세액	(식 1-2)
[부부단위의 소득세 산출세액]	
={Σ개인별 소득세 과세표준÷2×세율(6~45%)}×2	(식 2-1)
[가족단위의 소득세 산출세액]	
={Σ개인별 소득세 과세표준÷가족계수*×세율(6~45%)}×가족계수*	(식 2-2)
* <표 5>의 프랑스 가족계수	

먼저, 개인단위 하에서 가구 전체 소득세 산출세액은 부부 개인별로 계산된 소득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개인별 근로소득금액은 재정패널자

료의 근로소득금액²⁷⁾에서 2021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계산된 근로소득금액에서 재정패널자료에서 제공되는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합계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에 2021 과세연도의 소득세율(6~45%)²⁸⁾을 적용하여 개인별 소득세 산출세액을 추정하였다. 부부단위 적용(독일 모형)시 소득세 산출세액은 독일의 2분2승제 개념을 적용한다. 즉 앞서 살펴본 부부의 각 개인별 소득세 과세표준 합계액을 2로 나눈 값이 부부단위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소득세율을 적용한 값에 다시 2를 곱하여 부부단위 하에서의 소득세 산출세액을 추정한다. 가족단위(프랑스 모형) 하에서의 소득세 산출세액은 2장에서 살펴본 프랑스 가족계수제도를 적용한다. 즉 가구원 개인의 소득세 과세표준 합계액²⁹⁾에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프랑스의 가족계수를 나눈 값이 가족단위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소득세율을 적용한 값에 다시 가족계수를 곱하여 가족단위 하에서의 소득세 산출세액을 추정한다. 아울러 오종현 등(2023)의 연구방법에 따라, 부부·가족 단위의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소득세 과세단위에 따른 소득세 산출세액의 변화 정도를 재정패널 자료의 근로소득금액 데이터(즉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 차감 전 금액)를 기준으로 표본을 십분위로 나누어 각 소득구간 별로 비교한다. 아울러 개인단위 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 가구 전체의 소득이 동일한 경우 맞벌이 보다 홀벌이 부부의 세부담이 불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를 맞벌이 가구와 홀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맞벌이 가구는 재정패널데이터의 응답 가구원 수가 2명이면서 응답 가구원 2명 모두가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로 정의하였다.

2. 표본 선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5차 재정패널 자료의 자녀가 있는 기혼가구로 정하였다. 기혼가구는 재정패널데이터의 가구원 인적현황에서 혼인상태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여 판단하였고,³⁰⁾ 자녀 유무는 재정패널의 가구데이터에서 제공하는 만 18세 미만 가구원 수가 존재하면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측정방법에 따라 기혼가구는 총 5,881 가구로 선정되었고 여기에 자녀가 없는 가구 3,996 가구를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직계비속, 사업소득

27) 재정패널데이터의 근로소득금액은 연봉 개념으로 비과세급여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나, 본 논문은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비과세급여가 제외된 총급여액으로 가정한다.

28)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았다.

29) 본 논문의 표본은 부부와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구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부부 개인별 소득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된다.

30) 이혼 또는 사별가구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등 다른 소득 유무가 소득세 산출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가구원 구성이 부부와 18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표본으로 한정하고,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표본에서 제외 하였다(848 가구). 이러한 표본 선정 절차에 따라 최종 표본은 1,037가구로 확인되었다.

<표 9>는 표본 분포 현황을 보여주는데, 전체 표본 중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비중은 각각 60%와 40%이다. 자녀 수별 표본 분포 현황을 보면, 자녀 1명이 전체 가구의 40%, 자녀 2명은 50%, 자녀 3명 이상은 10%으로 나타났다.

〈표 9〉 표본 분포 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이상		합계	
	표본	비중	표본	비중	표본	비중	표본	비중
맞벌이 가구	263	60	283	60	43	50	589	60
홑벌이 가구	189	40	218	40	41	50	448	40
합계	452	100(40)	501	100(50)	84	100(10)	1,037	100(100)

주 : 괄호()은 전체 표본 중 자녀 수별 표본이 차지하는 비중임.

IV. 시나리오 분석결과

1. 기술적 통계

<표 10>은 각 소득분위별 표본 수, 자녀 수, 맞벌이 가구 비중, 그리고 표본의 각 구간별 총급여액, 과세표준, 산출세액의 평균을 보인 표인데, 표본 상의 평균 자녀 수는 1.7명, 맞벌이 가구는 전체 표본의 56.8%를 차지한다. 총급여액 평균은 7,302.2만원, 산출세액 평균은 626.8만원이며, 5분위 소득구간의 총급여액 평균은 6,353.6만원, 산출세액 평균은 378.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소득분위 구간별 주요 변수의 평균 값 (단위 : 가구, 명, %, 만원)

소득 분위	N	자녀 수	맞벌이 가구 비중	소득세 개인단위 과세체계		
				총급여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1	104	1.6	26.0	2,433.4	857.1	65.5
2	104	1.7	23.1	3,863.7	1984.1	198.5
3	106	1.6	42.5	4,706.3	2,344.0	242.6

〈표 10〉 소득분위 구간별 주요 변수의 평균 값 (계속)

소득 분위	N	자녀 수	맞벌이 가구 비중	소득세 개인단위 과세체계		
				총급여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4	135	1.7	52.6	5,636.5	3,029.1	330.8
5	71	1.8	71.8	6,353.6	3,499.7	378.1
6	103	1.7	61.2	7,053.5	4,076.9	480.6
7	116	1.7	69.0	7,955.8	4,892.1	617.0
8	91	1.6	78.0	9,155.0	5,869.4	771.9
9	104	1.7	73.1	10,775.8	7,183.9	1,049.3
10	103	1.5	78.6	15,567.2	11,512.6	2,183.4
합계	1,037	1.7	56.8	7,302.2	4,489.7	626.8

주 : (총급여액) 가구 내 개인별 총급여액(=재정패널자료 근로소득금액(코드 p15bb002))의 합계액,
 (과세표준) 가구 내 개인별 소득세 과세표준(=총급여액(재정패널자료 근로소득금액 코드(p15bb002))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액-소득공제(재정패널자료 근로소득 전체 소득공제금액(코드 p15ca002))의 합계액, (산출세액) 가구 내 개인별 소득세 산출세액(=개인별 소득세 과세표준×소득세율
 (6~45%))의 합계액

<표 11>은 현행 소득세법(개인단위) 하에서 맞벌이가구와 홀벌이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맞벌이 가구의 전체 평균 산출세액은 604.6만원, 홀벌이가구의 전체 평균 산출세액은 656만원으로 홀벌이가구의 산출세액이 맞벌이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1.1배 높다. 동일 근로소득 구간별 맞벌이가구와 홀벌이가구의 산출세액의 차이를 비교하면, 소득 10분위 구간에서 홀벌이가구의 산출세액이 맞벌이 가구의 산출세액보다 평균적으로 2.5배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의 3분위(평균 총급여액 4,706.3만원)와 6분위(평균 총급여액 7,053.5만원) 구간에서 맞벌이 가구 보다 홀벌이 가구의 산출세액 부담이 1.9배로 2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홀벌이 가구의 세부담이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보다 높은 정도는 고소득 구간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분포 구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다만, 1분위와 5분위 구간에서 맞벌이 가구 대비 홀벌이 가구의 산출세액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6배).

〈표 11〉 개인단위, 소득분위 구간별 맞벌이 가구와 홀벌이 가구의 소득세 산출세액 비교
(단위 : 가구, 만원)

소득 분위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B/A
	N	총급여액	과세표준	가구 전체 산출세액 (A)	N	총급여액	과세표준	가구 전체 산출세액 (B)	
1	27	2,898.2	668.2	45.4	77	2,270.4	923.3	72.6	1.6
2	24	3,881.3	1,457.2	122.1	80	3,858.4	2,142.1	221.4	1.8
3	45	4,673.8	1,899.1	162.4	61	4,730.3	2,672.2	301.7	1.9
4	71	5,574.7	2,604.4	247.6	64	5,705.0	3,500.2	423.0	1.7
5	51	6,364.3	3,237.6	320.5	20	6,326.6	4,168.0	525.1	1.6
6	63	7,056.0	3,514.6	357.3	40	7,049.7	4,962.5	674.9	1.9
7	80	7,956.8	4,483.6	503.1	36	7,953.7	5,800.0	870.2	1.7
8	71	9,157.1	5,582.4	670.7	20	9,147.3	6,888.0	1,131.1	1.7
9	76	10,738.1	6,806.7	886.7	28	10,878.0	8,207.9	1,490.7	1.7
10	81	14,741.9	10,374.0	1,641.5	22	18,605.5	15,704.8	4,178.7	2.5
합계	589	8,223.3	4,792.1	604.6	448	6,091.2	4,092.0	656.0	1.1

주 : <표 10>의 변수 정의 참고

2. 독일 제도(부부단위) 도입시 소득세 산출세액 변화

<표 12>는 부부단위 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 개인단위과세 대비 맞벌이 가구와 홀벌이 가구의 소득세 산출세액의 감소율을 보여준다. 부부단위 과세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전체 산출세액 평균은 543.1만원으로 개인단위과세 대비 평균적으로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홀벌이 가구의 전체 산출세액 평균은 480만원으로 개인단위 대비 평균적으로 30% 감소하여 부부단위로 소득세 과세단위가 변경될 경우 맞벌이 가구보다 홀벌이 가구의 소득세 산출세액 감소정도(%)가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독일 제도(부부단위)를 도입할 경우 홀벌이 가구의 부담세액 경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표본의 평균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부부단위 적용시 홀벌이 가구의 소득세 산출세액이 맞벌이 가구의 산출세액의 0.9배로 나타나 개인단위과세에서 홀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보다 높은 수준(1.1배)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부부단위로 변경될 경우 개인단위 대비 소득세 산출세액의 감소율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낮은 소득 구간을 제외하고 소득 2분위에서 4분위 구간은 20% 감소하고 그 외의 소득구간에서는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홀벌이가구의 경우 가장 낮은 소득 구간에서 10%로 감소율이 가장 낮았고, 소득 2분위(평균 총급여액 3,858만원)에서 소득세 산출세

액의 감소율이 4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홑벌이가구의 소득세 산출세액 감소율이 30%인 소득구간은 3분위(평균 총급여액 4,730만원)와 고소득 구간인 8~10분위(평균 총급여액 9,147만원~18,60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소득구간 4분위부터 7분위 구간의 평균 감소율은 약 20% 수준이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다음의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째, 현행 개인단위에서 부부단위로 소득세 과세단위가 변경될 경우 근로소득가구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 보다는 홑벌이 가구의 산출세액 감소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같은 점은 홑벌이 가구에서의 한 개인납세자가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을 벌어들인다는 점에서 해당 개인납세자의 과세표준이 부부단위과세로 감소될 때 한계세율의 감소 혜택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개인단위에서 부부단위로 변경시 세제혜택은 고소득 구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구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석 대상의 맞벌이 가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10%의 산출세액 감소율을 보였으나, 소득구간별로 2분위에서 4분위 가구의 산출세액 감소율이 2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홑벌이 가구에도 이런 경향이 부분적으로 발견되는데, 산출세액 감소율이 평균적으로 30% 였지만, 2분위 홑벌이 가구의 산출세액 감소율이 40%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도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2〉 소득세 과세단위 부부단위 변경시(독일 2분2승제 제도) 소득분위 구간별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소득세 산출세액 비교
(단위 : 가구, 만원)

소득 분위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B/A
	N	총급여액	과세표준	산출세액(A)	증감률	N	총급여액	과세표준	산출세액(B)	증감률	
1	27	2,898.2	334.1	40.3	0.0	77	2,270.377	461.7	55.6	-0.1	1.4
2	24	3,881.3	728.6	88.8	-0.2	80	3,858.442	1,071.1	136.3	-0.4	1.5
3	45	4,673.8	949.5	122.5	-0.2	61	4,730.296	1,336.1	204.0	-0.3	1.7
4	71	5,574.7	1,302.2	201.3	-0.2	64	5,705.046	1,750.1	319.7	-0.2	1.6
5	51	6,364.3	1,618.8	275.6	-0.1	20	6,326.576	2,084.0	409.2	-0.2	1.5
6	63	7,056.0	1,757.3	323.8	-0.1	40	7,049.69	2,481.3	528.4	-0.2	1.6
7	80	7,956.8	2,241.8	461.9	-0.1	36	7,953.683	2,900.0	654.0	-0.2	1.4
8	71	9,157.1	2,791.2	621.4	-0.1	20	9,147.264	3,444.0	817.2	-0.3	1.3
9	76	10,738.1	3,403.4	807.8	-0.1	28	10,878.03	4,103.9	1,031.1	-0.3	1.3
10	81	14,741.9	5,187.0	1,480.7	-0.1	22	18,605.46	7,852.4	3,130.5	-0.3	2.1
합계	589	8,223.3	2,396.1	543.1	-0.1	448	6,091.222	2,046.0	480.0	-0.3	0.9

주 : (변수 정의) 소득세 과세단위 부부단위로 변경시 소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산정방법은 (식 2-1) 참고
(증감률) 개인단위 대비 부부단위 산출세액의 감소율

3. 프랑스 제도(가족단위) 도입시 소득세 산출세액 변화

<표 13>은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단위과세가 프랑스의 가족단위과세(가족계수 적용)로 바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의 변화를 보여준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개인단위과세 대비 산출세액 감소율은 평균 20%로 나타났는데, 부부단위과세 적용시 평균 10%보다 10% point 정도 세제혜택이 높음 것으로 나타났다. 홑벌이 가구에서는 개인단위과세 대비 산출세액 감소율은 평균 30%로 부부단위과세 적용 시의 30%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13> 소득세 과세단위 가족단위 변경시(프랑스 가족계수제도) 소득분위 구간별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소득세 산출세액 비교 (단위 : 가구, 만원)

소득 분위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B/A
	N	총급여액	과세표준	산출세액(A)	증감률	N	총급여액	과세표준	산출세액(B)	증감률	
1	27	2898.2	235.8	40.3	0.0	77	2270.4	333.4	55.6	-0.1	1.4
2	24	3881.3	504.9	87.4	-0.2	80	3858.4	761.1	128.6	-0.4	1.5
3	45	4673.8	677.2	114.2	-0.2	61	4730.3	959.0	163.4	-0.4	1.4
4	71	5574.7	931.8	162.8	-0.3	64	5705.0	1210.6	241.6	-0.4	1.5
5	51	6364.3	1139.9	217.2	-0.3	20	6326.6	1398.0	308.9	-0.4	1.4
6	63	7056.0	1259.2	252.9	-0.3	40	7049.7	1676.3	419.9	-0.4	1.7
7	80	7956.8	1589.3	375.4	-0.2	36	7953.7	2039.1	555.3	-0.4	1.5
8	71	9157.1	1989.5	529.6	-0.2	20	9147.3	2493.7	730.8	-0.4	1.4
9	76	10738.1	2448.6	719.7	-0.2	28	10878.0	2867.0	928.4	-0.4	1.3
10	81	14741.9	3772.7	1294.3	-0.2	22	18605.5	5488.9	2678.3	-0.4	2.1
합계	589	8223.3	1719.3	465.3	-0.2	448	6091.2	1432.7	407.3	-0.3	0.9

주 : (변수 정의) 소득세 과세단위 부부단위로 변경시 소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산정방법은 (식 2-1) 참고 (증감률) 개인단위 대비 부부단위 산출세액의 감소율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1분위 구간에서 개인단위 대비 소득세 산출세액의 감소율은 홑벌이 가구에서 평균 10%로 나타났다. 그 외의 소득 구간에서 맞벌이 가구는 평균 20%~30% 수준이며, 홑벌이가구는 평균 4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부부단위과세에서는 개인단위 대비 소득세 산출세액의 감소율이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은 맞벌이가구는 2~4분위, 홑벌이가구는 2분위 소득구간인 것과 달리, 가족단위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는 소득 구간은 홑벌이 가구는 1분위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으로 확대되었고 맞벌이 가구는 4분위에서 6분위로 소득 구간이 높아 졌다.

프랑스 가족계수제도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감소 효과가 자녀 수와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자녀 수별(1명, 2명, 3명이상)로 소득세 산출세액의 감소정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14>의 Panel A와 같다. 가구의 자녀가 1명, 2명인 경우 각 소득 구간별로 개인단위과세 대비 프랑스 가족단위과세(가족계수적용) 적용시 소득세 산출세액의 감소율은 맞벌이가구의 경우 10%~30% 수준이고, 홀벌이가구의 경우 10%~40% 수준이었다. 그러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는 소득 5분위부터 9분위에서 자녀 2명 이하일 때 산출세액 감소율 20~30% 보다 높은 40%의 감소율을 보였고, 홀벌이 가구는 소득 3분위부터 8분위 구간에서 자녀 2명 이하일 때의 산출세액 감소율 30%~40% 보다 높은 50%로 나타났다. 이는 프랑스 가족계수 적용시 납세의 무자가 적용받는 초과누진세율 감소효과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셋째 자녀부터 가족계수 증가분(1)이 자녀 2명까지의 가족계수(0.5) 2배인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부부단위과세(<표 14>, Panel B)의 경우에는 자녀 수의 변화에 따라 산출세액의 감소율에 크게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홀벌이가구의 자녀가 2명인 경우 상대적으로 다수의 구간에서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맞벌이 가구는 주로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2분위에서 4분위 사이의 근로소득가구가 높은 산출세액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자녀 수 별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시 소득분위 구간별 맞벌이 가구와 홀벌이 가구의 소득세 산출세액 비교
(단위 : 만원)

Panel A : 가족단위과세(프랑스 모형)													
소득 분위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1명		2명		3명 이상		1명		2명		3명 이상		
	산출세액	감소율	산출세액	감소율	산출세액	감소율	산출세액	감소율	산출세액	감소율	산출세액	감소율	감소율
1	40.3	-0.1	36.3	0.0	49.3	0.0	55.5	-0.1	56.3	-0.1	50.9	-0.1	-0.1
2	83.5	-0.2	89.9	-0.2	93.7	-0.1	129.0	-0.4	126.7	-0.4	141.0	-0.4	-0.4
3	118.2	-0.2	116.3	-0.2	90.1	-0.2	159.4	-0.4	164.7	-0.4	188.6	-0.5	-0.5
4	167.7	-0.3	148.7	-0.3	201.2	-0.3	283.1	-0.3	220.0	-0.4	228.4	-0.5	-0.5
5	258.2	-0.3	198.0	-0.3	164.5	-0.4	335.9	-0.3	323.5	-0.4	247.9	-0.5	-0.5
6	264.2	-0.3	248.8	-0.3	200.9	-0.4	467.6	-0.3	433.7	-0.4	296.8	-0.5	-0.5
7	416.3	-0.2	354.4	-0.3	293.1	-0.4	646.4	-0.3	513.9	-0.4	422.9	-0.5	-0.5
8	565.8	-0.2	519.5	-0.2	392.3	-0.4	748.4	-0.3	726.0	-0.4	598.1	-0.5	-0.5
9	791.6	-0.2	684.6	-0.2	433.3	-0.4	1019.0	-0.3	883.0	-0.4	906.9	-0.4	-0.4
10	1382.3	-0.2	1231.8	-0.2	726.5	-0.2	1911.2	-0.4	1310.8	-0.4	11849.8	-0.4	-0.4
전체	497.2	-0.2	471.3	-0.2	230.2	-0.3	420.1	-0.3	315.8	-0.4	835.2	-0.4	-0.4
Panel B : 부부단위과세(독일 모형)													
소득 분위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1명		2명		3명 이상		1명		2명		3명 이상		
	산출세액	감소율	산출세액	감소율	산출세액	감소율	산출세액	감소율	산출세액	감소율	산출세액	감소율	감소율
1	40.3	-0.1	36.3	0	49.3	0	55.5	-0.1	56.3	-0.1	50.9	-0.1	-0.1
2	83.5	-0.2	93.1	-0.2	93.7	-0.1	134.9	-0.4	135.6	-0.3	152.1	-0.4	-0.4
3	124.3	-0.2	127.7	-0.2	95.3	-0.2	192.7	-0.3	209.9	-0.3	255.5	-0.3	-0.3
4	199.6	-0.2	185.6	-0.2	286.9	0	332.9	-0.2	305.2	-0.2	355	-0.2	-0.2
5	307.2	-0.1	265.7	-0.1	209.3	-0.3	389.9	-0.2	431.5	-0.2	400.5	-0.2	-0.2
6	309.6	-0.1	341.8	0	291.3	-0.2	521.6	-0.2	541.7	-0.2	500.1	-0.2	-0.2
7	467.5	-0.1	453.8	-0.1	486.9	-0.1	700.4	-0.3	621.9	-0.2	636.1	-0.2	-0.2
8	618.6	-0.1	627.5	0	602.6	-0.1	802.4	-0.3	834	-0.3	814.1	-0.3	-0.3
9	845.6	-0.1	790	0	649.3	-0.1	1082.5	-0.3	992.5	-0.3	1128.2	-0.3	-0.3
10	1532.2	-0.1	1449	-0.1	942.5	0	2164	-0.3	1571.7	-0.3	14276.4	-0.2	-0.2
전체	551.1	-0.1	567.6	-0.1	332.9	-0.1	467.2	-0.3	379.9	-0.3	1071.7	-0.2	-0.2

V. 시사점 및 고려사항

앞선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현행 우리나라의 과세제도(개인과세제도)에서 독일 모형(부부단위과세) 또는 프랑스 모형(가족단위과세)으로 변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예상된다. 우선 우리나라가 독일 모형(부부단위과세)으로 과세단위를 변경할 경우 맞벌이 가구 보다는 홀벌이 가구의 산출세액 감소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홀벌이 가구에서의 한 개인납세자가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을 벌어들인다는 점에서 해당 개인납세자의 과세표준이 부부단위과세로 반감(半減)될 때 한계세율의 감소 혜택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개인단위과세 체계에서 부부단위과세체제로 변경할 때의 세제혜택의 크기가 비울 측면에서 고소득 구간 못지 않게 저소득 구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우리나라가 프랑스 모형(가족단위과세)으로 변경할 경우 앞선 독일 모형과 동일하게 홀벌이 가구의 산출세액의 감소가 맞벌이 가구보다 높았고, 산출세액 감소율이 높은 구간도 넓게 나타났다. 특히, 홀벌이 가구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뚜렷하게 발견되었는데, 이는 프랑스 가족계수제도가 고소득층의 세제혜택을 주어 그들의 출산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OECD 2011)의 결과와 연결된다. 그리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산출세액 감소율이 뚜렷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가족계수의 증가폭이 자녀 3명 이상에서 급증(0.5 → 1)함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을 제고를 위해 권장되는 자녀의 수가 있다면 이 가족계수의 증가폭의 조정으로 해당되는 수만큼 자녀를 가진 가구에 높고 넓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부부단위과세에 비해 자녀수에 비례한 세제혜택이 뚜렷하게 보이고 고소득자에 대한 산출세액의 감소율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부부단위과세와 세대단위과세가 개인단위과세제도에 비해 분명 결혼 가구, 자녀가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세제로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고려되어야 한다.³¹⁾ 초과누진 세율 하에서 합산분할과세는 혼인의 조세 중립성 훼손 문제, 상이(相異)한 납세자 군(기혼부부와 독신자 또는 독신세대주, 기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와 홀벌이 부부) 간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만약에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시 독일, 미국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개인단위와 소비단위 중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대로 소득공제와 세율구조 유지시 소득세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공제제도 변경 등이 함께 요구³²⁾될 수도 있다. 원천징수(특히 근로소득자) 관련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어,³³⁾ 연대납세의무를 강화 등의

31) 김완석, 앞의 글, pp.190~216.

32) 안종범·진승훈·김동준,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 제28권 제2호, 2010, p.171.

33) 2분2승제 도입시 근로소득 부부의 경우 원천징수방안은 부부 중 한 쪽이 주된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방안, 종전과 같이 부부 각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2분2승제 선택시 부부가 종합소득세 과세표

보완책을 고려해야 할 수도가 있다. 또한 부부단위 과세방안은 민법상 부부별산제와 조화롭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누진세율 구조에서 고소득자가 고세율의 한계세율에 노출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고, 절대 산출세액의 감소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과세단위 변경시 과도한 세부담 경감 방지를 위해 과세단위 변경에 따른 세부담 경감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³⁴⁾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 대응 목적으로 조세 측면에서 과세단위를 수정할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소득세 과세단위의 변화는 근원적인 세제의 변화이므로 해당 정책을 적용하기 전에 실증적 증거 자료의 검토는 필히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미시 수준 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다만, 분석 수준이 산출세액의 감소 정도까지만 분석되었고, 현행 소득공제가 그대로 적용됨을 가정하였다는 점, 부부 간의 소득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준 확정신고하는 방안이 있으나 두 방안 모두 개인주의보다 납세순응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김완석, 앞의 글, pp.191~192).

34) 예를 들어 프랑스는 가족계수제도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 경감 문제 방지를 위한 가족계수제도 통합한 도규정을 두고 있다(상한액은 납세자 본인 1(부부합산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총 2)에 추가되는 0.5 가족계수별 조세경감 한도액은 1,678 유로(2023년 기준)이다(The General Tax Code, Article 197 I.2.)).

참고문헌

- 김완석 · 정지선. 2023. 『소득세법론』, 서울 : 삼일인포마인.
- 김완석. 2005.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성은. 2023. “출산 · 혼인 · 양육 관련 조세지원 현황 및 입법 동향”.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023호).
- 신윤정. 2013. “프랑스 가족 정책 개혁 동향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 안종석 · 박수진 · 이서현. 2017,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 (17-03).
- 안종범 · 전승훈 · 김동준. 2010.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 제28권 제2호.
- 안창남.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 프랑스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오종현 · 서동연 · 허윤영. 2023.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단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 (23-03).
- 이세진 · 이예지. 2023.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124호).
- Chen, D. L. 2011. Can countries reverse fertility decline? Evidence from France’s marriage and baby bonuses, 1929–1981.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8 : 253–272.
- Gauthier, A. H. 2007. The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 a review of the literature.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6 : 323–346.
- Laroque, G., & Salanié, B. 2014. Identifying the response of fertility to financial incentive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29(2) : 314–332.
- Letablier, M. T. 2008. Why France has high fertility : The impact of policies supporting parents. *The Japanese Journal of Social Security Policy* 7(2) : 41–56.
-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 OECD. 2023. Indexation of Labor Taxation and Benefits in OECD Countries.
- PWC, Worldwide Tax Summaries.
- Thévenon, Olivier. 2011. Family Policies in OECD Countries : A Comparative Analysi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7(1) : 57–87.

Scenario Analysis of Joint Taxation Split for Addressing Low Birthrate Issues

Ye Ji Lee* · Hyeongtae Cho** · Sang-kwon Cha***

〈Abstract〉

The issue of low birth rates in our country has long been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despite various governmental measures, it continues to worsen without any signs of improvement. In this context,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our country ranks low among major OECD member countries in terms of tax support related to children. Some have suggested that more proactive tax support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One such proposal is to reconsider the individual-based taxation system, which is a principle of our income tax regime, and introduce a joint-splitting taxation system like that of Germany or France.

This study conducts a scenario analysis, dividing households into single-earner and dual-earner households, to estimate the potential changes in tax burdens based on data from the National Tax Panel, assuming our country adopts such a joint-splitting taxation system. The analysis shows that under the current individual-based taxation system, the average calculated tax burden for single-earner households is higher than that for dual-earner households. In such a situation, introducing a couple-based taxation system, like in Germany, would likely result in a greater reduction in the calculated tax burden for single-earner households compared to dual-earner households. Moreover, the reduction rate in calculated tax burden appears to be higher in lower-income brackets, indicating that the tax benefits would not be limited to high-income earners.

Even under a family-based taxation system, like in France, the reduction in the calculated tax burden for single-earner households was significant, with broader income ranges experiencing reductions compared to dual-earner households. Additionally, the larger the number of dependent children, the more pronounced the reduction effect, especially for single-earner household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the incremental value of family coefficients. The reduction in tax burden for high-income earners was also notably larger in single-earner households. If joint-splitting taxation is introduced, these effects of tax burden reduction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potential issues such as the disruption of tax neutrality regarding marriage, fairness in taxation, and compliance costs for taxpayers.

* Ph.D.,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yeji0320@uos.ac.kr,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ngik University, cht1212@hongik.ac.kr, Corresponding Author

*** Assistant Professor, The Department of Global Culture Management, Calvin University, sgcha01@hanmail.net, Co-author

This study contributes by providing policy insights to policymakers through a preliminary analysis of how changes in the tax unit, as a measure to address the low birth rate, would affect tax burdens. However,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analysis was confined to the extent of the reduction in calculated tax burdens, and it assumed that current income deductions would remain in place.

〈Key words〉 Low Birth Rate, Individual-Based Taxation, Joint-Splitting Taxation, Couple-Based Taxation, Family-Based Taxation